
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알림 공문을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5. 20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알림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(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), 제27조(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), 제28조(반환명령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(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(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),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오O	1972.6.18.	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알림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, 제28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제한, 반환명령 등	○ 국민취업지원제도 1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액(500,000원), 2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액(500,000원), 추가징수액(500,000원) ○ 처분일로부터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: 2024. 5. 20. ~ 2024. 6. 3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팀 이인섭(Tel. 02-2077-334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